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11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12.

발 의 자 : 황운하 · 정춘생 · 강경숙
김재원 · 장경태 · 김선민
한창민 · 차규근 · 박상혁
김준형 · 이해민 · 박은정
백선희 · 서왕진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34조는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, 제45조는 위원회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

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「검찰청법」 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,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

이에 위원회가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 및 고발 할 수 있는 대상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

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34조, 제45조)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공소청법안」(의안번호 제3354호),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수사절차법안」(의안번호 제3348호) 및 「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355호), 황운하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중대범죄수사청법안」(의안번호 제334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검찰총장 또는 관할”을 각각 “관할”로 한다.

제4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검찰총장”을 각각 “관할 수사기관의 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고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 및 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 및 고발등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)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<u>검찰총장 또는 관할</u>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.	제34조(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관할</u> ----- ----- -----.
②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<u>검찰총장 또는 관할</u>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	② ----- <u>관할</u> ----- ----- -----.
제45조(고발 및 징계권고)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<u>검찰총장</u> 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. 다만, 피고발인이 군인이나	제45조(고발 및 징계권고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관할 수사</u> <u>기관의 장</u> ----- -----.

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. ② (생략) ③ 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<u>검찰총장</u>,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. ④ (생략)	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관할 수사기관의 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
--	---